

보도시점 (전매체) 10.15(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에 기여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에 따르면 중소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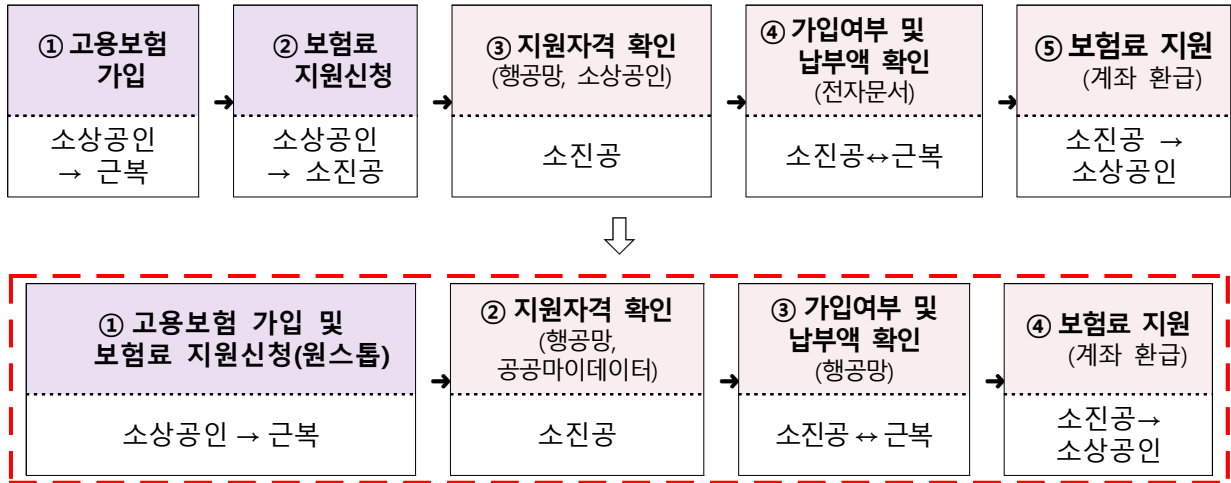
* ① 6개월 연속 적자, ②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③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하지만,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8.29) 하였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향후, 중기부는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개선(안) >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재도약과	책임자	과 장	장상만 (044-204-7850)
		담당자	사무관	남경탁 (044-204-7539)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책임자	과 장	신훈묵 (032-450-1151)
		담당자	주무관	허 준 (032-450-1141)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고용부 소관)

- (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 ① 6개월 연속 적자, ② 대규모의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③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 (가입대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 보험가입(온·오프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구직급여 지급)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월 109~202만원)
 -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1~3년 미만 120일/ ~5년 미만 150일/ ~10년 미만 180일/ 10년이상 2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구직급여 지급 수준 >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월)*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기준보수의 60%)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보수(월)'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2022.12.20.)

** 보험료 :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보수액(월) × 보험료율(2.25%) (월 4.1 ~ 7.6만원)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기부 소관)

- (목적)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 보험료 지원 신청(온라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go.sbiz.or.kr)
- (보험료 지원)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단위: 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월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지원비율) : ('23) 납부보험료의 20 ~ 50% → ('24) 50 ~ 80%

** (지원규모) : ('23) 50억원, 2.5만명 → ('24) 150억원, 4만명(안)